



Workers'  
Compensation  
Board

# 산재 근로자 권익보호관



산재 근로자 권익보호 사무소(Office of the Advocate for Injured Workers)는 뉴욕주에서 직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를 돋기 위한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익보호 담당자는 산재 근로자가 산재보상 시스템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안내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스템이 복잡할 수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보호 사무소에 **877-632-4996**번으로 전화하거나 [advinjwkr@wcb.ny.gov](mailto:advinjwkr@wcb.ny.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권익보호관은 다음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 청구 제출 방법
- 사망 시 대처 방법
- 사용되는 양식
- 보상 대상자
- 분쟁 청구
- 심리 및 항소 권리
- 적시 제출
- 기록 보관
- 의료 치료에서 귀하의 역할
- 이용 가능한 의료 혜택
- 이용 가능한 직업 재활 및 사회복지 서비스

산재 근로자 권익보호 사무소의 음부즈맨은 산재 근로자가 산재보상 시스템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고 해결을 시도합니다.

## 직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작업장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으십시오.
-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부상을 보고하십시오.
- 부상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뉴욕주 산재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WCB)(위원회)에 청구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업무 관련 질병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직업병에 대한 산재보상 청구는 장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거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해당 질환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상 사기는 E급 중죄로, 최대 4년의 징역과 \$5,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

확정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모든 승인된 의료 서비스는 고용주의 보험사가 지불합니다. 이 서비스는 귀하가 일을 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의료 서비스는 평생 혜택이므로, 귀하의 청구는 향후 치료를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wcb.ny.gov/find-a-provider](http://wcb.ny.gov/find-a-provider)에서 승인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찾거나 의료 책임자 사무소에 **(800) 781-236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이러한 제공자들 중 누구에게서든 또는 귀하의 주치의가 승인된 경우 그에게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손실 급여

산재보상 임금 손실 급여는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적절한 의료 문서를 기반으로 지급됩니다. 급여는 사고 발생일 이전 52주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주급의 최대 3분의 2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법으로 허용된 최대 급여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최대 급여 금액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되는 뉴욕주 평균 주급(New York State Average Weekly Wage, NYSAWW)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임금 손실 급여 금액은 귀하가 부상을 입은 연도의 NYSAWW를 기준으로 하며 연간 NYSAWW 인상에 따라 증가하지 않습니다.**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동시 고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직업의 임금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동시 고용’인 경우, 평균 주급을 결정하기 위해 임금이 합산됩니다.

산재 근로자 권익보호 사무소는 근로자, 노동조합, COSH 그룹, 근로자 권리보호 단체 및 고용주에게 중요한 산재보상 문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합니다.

교육 세션을 예약하려면 [advinjwkr@wcb.ny.gov](mailto:advinjwkr@wcb.ny.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다가오는 교육 웨비나 중 하나에 참여하여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얻으십시오! 등록하려면 [wcb.ny.gov/webinars](http://wcb.ny.gov/webinars)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wcb.ny.gov/recorded-webinars](http://wcb.ny.gov/recorded-webinars)에서 근로자를 위한 녹화된 웨비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주 산재보상위원회는 적절한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법규 준수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 보호합니다.

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cb.ny.gov](http://wcb.ny.gov)를 방문하십시오.

위원회 알림 신청: [wcb.ny.gov/Notify](http://wcb.ny.gov/Notify).

팔로우하세요.



## 청구 제출

가장 빠른 방법: [wcb.ny.gov/file-claim](http://wcb.ny.gov/file-claim)을 방문하여 온라인 **근로자 청구서(양식 C-3)**를 작성하십시오.

원하는 경우, **양식 C-3**의 종이 버전을 제출할 수 있으며 [wcb.ny.gov/forms](http://wcb.ny.gov/form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양식 C-3**를 제출하는 데 2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 청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877) 632-49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전화 시 다음 정보를 요청받게 됩니다.

- 귀하의 이름
- 귀하의 WCB 케이스 ID(제출된 경우)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지역 번호 포함)
- 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수신한 서신

원격 심리에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사건 문서를 업로드하거나 조회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자세한 정보는 [wcb.ny.gov/iwtoolkit](http://wcb.ny.gov/iwtoolkit)을 방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Workers'  
Compensation  
Board**